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| | 시 민 | |
| 문서번호 | 건축기획과-19647 | 주무관 | 건축설비팀장 |
| 결재일자 | 2018. 10. 4. | 방진표 | 김현기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 | 건축기획과장 |
| 방침번호 | | | 주택건축국장 |
| | | 협 조 | 10/04 류훈 |
| | | | 정광순 |
| | | | 한일기 |
| | | | 장덕석 |
| | | | 이효선 |



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

2018. 10.

주택건축국
(건축기획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| 구 분 |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| 검토 완료 | 해당 없음 | 비 고 |
|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정책의 제형성 | 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정책수립 | 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정책집행 | 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정책홍보 | 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기타사항 | 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| | ◆ 공개 여부를 “ 비공개 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 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 | ■ | <input type="checkbox"/> | |

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

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

I

개요

■ 관련규정

-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(건축물의 냉방설비 등)
 -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
 -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
 - 외벽 설치 시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
 -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을 할 것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(난방설비 등)
 -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

■ 설치현황

- 건축물 외벽 또는 건축물 앞·뒤쪽의 보행로 옆에 설치
 - 공동주택의 경우 '06년부터 각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실내 설치 의무화 함.
- * 개별 냉난방의 일반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 기준 없음

○ 에어컨 실외기 설치 사진



보행도로 옆 설치



응축수 처리

■ 추진경과

○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2회) : 2018.9.13, 10.2

- 냉방장치 배출기(실외기) 설치 방법 개선 방안 논의
-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

II 문제점 및 추진방향

■ 문제점

- 보행공간을 차지한 실외기에서 내뿜는 열기와 소음으로 보행 불편
- 지지대 부실, 건물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실외기 낙하 사고 위험
- 건물외벽 설치 시 청소와 유지관리가 어려워 실외기 화재 위험성 증가
- 무질서하게 설치한 실외기, 응축수·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

■ 추진방향

- 냉방장치의 배출기(실외기) 건물내에 설치
 - 건축물 내에 설비 공간 확보 또는 옥상·노대 등 설치 공간 확보
- 도시미관을 고려한 실외기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 설치 공간 확보
- 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” 개정

Ⅲ

개선계획

■ 설치방법 개선

- 냉방설비의 배기장치(실외기)는 건축물 내(內)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
 - 설비용량 증설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시 설치 개소의 30% 이상 공간 추가 확보
 - 실내공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
- 발코니,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차폐시설(30% 이상) 설치
 - 옥상 및 지붕설치 시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치
 - ※ 차폐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으로 함
- 냉방설비의 응축수·냉매배관의 외부 노출 금지
 - 냉매 배관 및 응축수 설치를 위한 샤프트 공간 설치

■ 관련 규정 개정

○ 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” 개정

- 규칙 ‘제23조(건축물의 냉방설비 등)’의 에어컨실외기 건축물내 설치에 따른 불필요 조항(③항 3호) 삭제 및 항목 추가

〈항목 추가 내용〉

냉방시설의 배기장치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건축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발코니, 노대, 옥상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 할 것

IV

향후 추진계획

○ 우리시와 자치구 건축심의·인허가 시 개선안 반영

- 시 행 : 2019. 1월부터

○ 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’ 개정 건의 : 2018. 10

붙임 : 1.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사례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